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9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이광희 · 조정식 · 박해철
이연희 · 김 윤 · 김태년
김우영 · 이재강 · 이주희
양문석 · 문금주 · 강득구
김성희 · 임미애 · 윤건영
박홍배 · 박정현 · 허종식
최혁진 · 이상식 · 모경중
이해식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 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피해의 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8(적용 제외)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적용한다.

1.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
2.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명의를 사용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

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
로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8(적용 제외) 전기통신금
용사기 중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에 대하여서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인 경우에는 적용한다.

1.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

2.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
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명
의를 사용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
한 행위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정지) ① -----

-----.

1. (현행과 같음)

2. -----금융감독원

<u>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u>	-----
<u>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u>	-----
<u>“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u>	-----
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	-----
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